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은 23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은

- 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생활전반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나. 지역사회에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원보호를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계약기간은

- 가.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나. 입소기간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경우 입소 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변동에 따라 변동 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보호자 회의를 통하여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0%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보험료 (본인부담금)	20%	보험공단이 80%이고 개인 부담금이 20%임. 단,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2%, 8%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
	식사재료비	1일/ 9,000원	1식 2,850원으로 하루 3식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무료

- 가. 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 나.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 다.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2%, 8%로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 라. 본원의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30일 기준).
· 식사재료비 1식 3,000원 / 1일 9,000원 / 30일 270,000원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을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 가.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요양원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무
(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나.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라.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 마. 건물 및 부대 요양원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 바.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 사. “을”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 의무
- 아. “을”, “병”이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내용에 대한 기록을 요구할 경우 표준 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할 의무

2. 입소자의 의무·권리

-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나. 요양원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다. 요양원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마. 기타 요양원 규칙 이행 의무
- 바. “갑”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
- 사. “갑”이 기록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요구할 권리

3. 보호자(신원인수인)(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권리

-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마. 기타 요양원생활 규칙이행
- 사. “갑”이 수집·관리하는 “을” 및 “병”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
- 아. “갑”이 기록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요구할 권리

(계약의 해제)

1.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해지

- 가. “을”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다만,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서비스 제공자의 해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을” 또는 “병”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다.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라. 요양원 내에서 요양원규칙이나 요양원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사.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아.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에 해당될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한다.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라.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급여비용의 변경절차는

- 가.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
- 나. 요양급여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 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
- 라.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서류 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본원에서는 수급자를 요양원에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서비스 내용은

- 가. 일상보호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외출 및 산책 시 동행, 의사소통 도움, 치매문제행동대처 등
- 나. 보건·의료서비스 : 의료기관 협약, 수급자 투약관리, 건강검진 등
- 다. 사회적응서비스
- 라. 가족연계 및 지역복지 서비스
- 마. 일상생활지원관련 서비스
- 바. 신체, 인지 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실시
- 사.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 및 교육하고, 요양원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매뉴얼 구축 및 정기적 교육 실시
- 아.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요양원 소독 관리 적극적으로 수행

3. 본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의 입소자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정의 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실시 전 본원과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조정할 수 있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입소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 라. 합숙용(2인용, 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상급침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라.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3. 입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기준

- 가. 치매가 있는 경우, 요양원은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증의 치매로 인해 요양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의한다.
- 나. 외상으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요양원은 욕창방지를 위한 매트를 제공하여 매2시간 이내에서 체위변경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욕창의 정도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연하곤란 등으로 비위관(비경구) 삽입을 요하는 경우, 비위관 삽입은 반드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요양원은 감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라.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흡인은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유치도뇨관 착용이 필요한 경우, 유치도뇨관 삽입은 반드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바.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요양원은 입소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요양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의한다.
- 사.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아.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 자. 기타 요양원에서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양원은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5. 입소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요양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나. 입소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는 월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나.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등)를 취한다.

다.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①.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②.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③.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①.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①.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양원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요양원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5.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병원 입원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협의 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을'은 '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을'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을'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갑'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을'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요양원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요양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을' 또는 '병'이 부담한다.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가. 요양원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다.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본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가. 요양원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나.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다.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라.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